■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[별지 제46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가납금(보관금) 세입조치 의뢰서

수　　신: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

다음 가납금(보관금)에 대하여 형의 판결선고가 확정되었으므로 「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세입조치를 의뢰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　음

종 류	건 수	금 액
계		

붙임: 세입조치 명세서 1부. 끝.

년　　월　　일

공소청

집행주무자　　인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